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53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 라. 회부일자 : 2022. 11. 10.

2. 제안이유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 및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조례 제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정비

- 1)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 2)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 3)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 4) 「서울특별시금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 5) 「서울특별시금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 6)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 7) 「서울특별시금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8) 「서울특별시금천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
- 9) 「서울특별시금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 10) 「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 11)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 12)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일본식
한자어 순화 (감안 → 고려)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7조제2항, 제3항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제2항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1조제1항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제1호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4. 관계법령

가.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

나.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한글맞춤법에 맞는 **제명의 띄어쓰기¹⁾**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²⁾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용어(감안→고려)**로 일괄정비하여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되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비를 권고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법제처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 여러 가지 정비대상 용어가 제시되어 있는 바, 매년 주기적으로 정비대상 용어를 발굴해서 꾸준히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1) 법제처에서는 2005.1.1.부터 관행적으로 붙여 쓰고 있는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으로 새로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행안부 2023년 기획정비 대상에도 제명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음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법제처 2021년 12월 발행

국어기본법

[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